

제263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4. 1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년 4월 18일
수석전문위원 이 한 진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19-19
- 나. 제 안 자: 윤유선 의원 외 12명
- 다. 제안일자: 2019년 4월 8일
- 라. 회부일자: 2019년 4월 16일

2. 제안이유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과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 기관(안 제2조, 제4조)
- 나. 구매촉진 시책의 추진,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매실적의 공표 (안 제5조 ~ 제7조)
- 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안 제9조)
- 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안 제10조)
- 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안 제13조)
- 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활성화 등(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 2)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일자리정책과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 4. 8. ~ 4. 15.)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강서구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제정내용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의미를 설명하였고,
- 안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을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강서구의회 사무국, 시설관리공단, 구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으로 명시하였으며,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 제5조에서는 구매촉진 시책의 추진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구매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제품의 구매실적 공표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다른 제품보다 우선 구매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안 제9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과 아울러, 안 제10조에 우선 구매
예외 조항을 두어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였고,
-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제품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에서는 판로확보를 위한 전시, 박람회 개최 및 참가,
판매장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기업 등
에 우선 구매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종합의견

-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정책적으로 위상이 높아졌으며, 사회적
경제의 개념의 확산과 발달에 큰 역할을 담당하면서 질적,
양적인 성장을 해 왔음.
- 그러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각종 사회적경
제기업들이 급격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측면에
서 아직도 제품의 판로는 미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는 것이 현실임.

- 이 조례의 제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대책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게 되는 등 지속 발전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2조(정의)제3호 “관내기업”은 이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아 불필요한 용어로 삭제 수정이 필요함.

붙임 관계법령 1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